의안번호	
의 결 연월일	2019. .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제 출 연 월 일	2019. .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제안이유

2020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4-2생활권) 내 2022.3월 개교예정인 (가칭)제2특수학교 면적 14,355㎡을 2,420,976천원에 매입하고자 함

나. 건물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4-2생활권)내 2022.3월 개교예정인 (가칭)제2특수학교 면적 12,760㎡에 39,324,237천원, (가칭)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면적 3,530㎡에 7,568,000천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의랑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면적 1,449㎡에 3,220,747천원, 연양초 교실 3,884㎡에 8,701,000천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함

다. 위치변경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883-58 일원에 설립예정인 집현유·초의 위치를 집현리 883-100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처분

조치원여자중학교 개축을 위해 연면적 1,034.56㎡, 대장가격 1,170,821천원인 건물 6개동을 철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계획 총괄

○ 취득

연번	기관명	면적(㎡)		추정가액(천원)	비고
취득 계		토지	14,355	2,404,763	
		건물	21,623	58,813,984	
1	'가칭' 제2특수학교	토지	14,355	2,404,763	
		건물	12,760	39,324,237	
2	'가칭'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토지	0	0	
		건물	3,530	7,568,000	
3	의랑초	토지	0	0	
		건물	1,449	3,220,747	
4	연양초	토지	0	0	
		건물	3,884	8,701,000	

○ 위치변경

기관명	부지위치		비고
	변경전	**변경후**	
집현유·초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883-58 일원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883-100 일원	

○ 처분

구분	기관명	면적(㎡)	대장가액(천원)	비고
건물	조치원여자중학교	1,034.56	1,170,821	다목적교실동 외 5동 철거

가칭 ‘제2특수학교’ 신설(안)

□ 추진배경

○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매년 평균 92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

○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81,677세대 204,190명 인구 유입 예정으로 세종누리학교 과밀 예상 (세종누리학교 35학급 225명 정원/ 2022년 기준 35학급 242명으로 정원 초과 예상)

○ 세종 누리학교 과밀 예상되는 2022년에 신설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보를 통한 공교육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리 619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6월

○ 사 업 비 : 41,745,213천원

○ 사업내용 : 3,4,5생활권 및 조치원 북부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용을 위한 제2특수학교 신설

○ 사업규모 및 소요액

학교구분		완성 기준		개교 시기	규모(㎡)		추정금액(천원)		
		학급수	학생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제2특수학교	유	3	12	’22.09	14,355	12,760	2,420,976	39,324,237	41,745,213
	초	12	72						
	중	6	36						
	고	6	42						
	전공	6	42						
	계	33	204						

※ 건축비 : 건축공사비, 기본설계비, 비품비, 감리비

□ 기대효과

○ 3, 4, 5생활권 특수교육대상 학생수용시설의 적기 확보로 인근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적정 학생 수용 가능

□ 추진일정

○ 2019. 10.~ 2022. 1. 설계 공모 및 공사 실시

○ 2022. 3. 제2특수학교 개교

□ 위치

○ 위치(위성사진)

학교
종교시설
주유소
산업업무
도시4-2단계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
(본 지구는 예정공사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
도시형산업
산업업무
© NAVER Corp. / SPOT / 국토지리정보원

4-2생활권 가칭 '집현유', '집현초' 학교 신설 변경(안)

□ 추진배경

○ **4-2생활권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역**으로 연구단지, 대학, 주거, 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 중

- **총 6,762세대** 중 현재까지 **4,073세대(7개 블록)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21.11~12월에 대규모 동시 입주** 예정

○ 지난 공유재산심의('18.10.1.) 이후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재심의** 필요

- 부지 위치와 면적, 조성원가의 변동, 건물면적의 변동, 개교시기의 변경

[부지 위치, 사업규모 변동사항]

1. 부지 위치 변동
(집현유・초) 당초 집현리 883-58답 일원 → 변경 집현리 883-100답 일원

2. 학급 규모 변동
(집현초) 당초 31(1)학급 → 변경 38(2)학급(일반 6학급, 특수 1학급 증)

3. 부지 면적 및 추정금액 변경
(집현유・초) 당초 16,000㎡ → 변경 17,800㎡(11% 증)
당초 2,602,279천원 → 변경 3,001,977천원(15% 증)

4. 건물 면적 및 추정금액 변경
(집현유・초) 당초 13,926㎡ → 변경 15,490㎡(11% 증)
당초 25,264,000천원 → 변경 27,728,000천원(9.7% 증)

5. 개교시기 변동
(집현유・초) 당초 '21.3월 → 변경 '22.3월

□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시 금남면 집현리 883-100답 일원(집현유, 집현초)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2월 (‘22.3.1.부터 학생배치)

○ 사 업 비 : 30,729,977천원

○ 사업내용 : 4-2생활권 집현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한 유(1), 초(1) 신설

○ 사업규모 및 소요액

학교구분		완성 기준		개교 시기	규모(㎡)		추정금액(천원)		
		학급수	학생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집현유	일반	11	220	’22.03	17,800	3,564	3,001,977	7,263,000	30,729,977
	특수	1							
	계	12	220						
집현초	일반	36	900	’22.03		11,926		20,465,000	
	특수	2							
	계	38	900						
계					17,800	15,490	3,001,977	27,728,000	30,729,977

※ 추정금액 산출기초

(부지비) = [부지면적 × 조성원가(843,252원))] × 적용요율(유 100%, 초・중 20%, 고 30%)

(건축비) = 세종시교육청 급별・학급당 건축 연면적에 따른 학교시설비 기준표

□ 기대효과

○ 4-2생활권 **학생배치 시설**의 **적기 확보**로 인근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적정 학생배치 가능**

□ 향후 추진일정

○ 2020. 1. 설계 공모 및 공사 실시

○ 2022. 3. 집현유, 집현초 개교

□ 위치

○ 변경전

집현리
1,108세대
근린공원
M4
LH(임대)
1,035세대
H1
210세대
H2
296세대
BRT
L3(임대)
417세대
반곡고
L2
602세대
새빛초
새빛유
B1
35세대
D2
79세대
D1
61세대
B2
47세대
근린공원
L4
830세대
청4-3
복4-1
H1
80세대
H2
104세대
M1
668세대
새나루유,초
H3
318세대
M3LH
918세대
L1
240세대
M4
459세대
집현중
집현유,초
근린
공원
M5
566세대
L2
900세대
괴화산
4-1
연구시설4-1
산업4-1
산업4-2
대학4-7
청4-4
변4-1
유보지

○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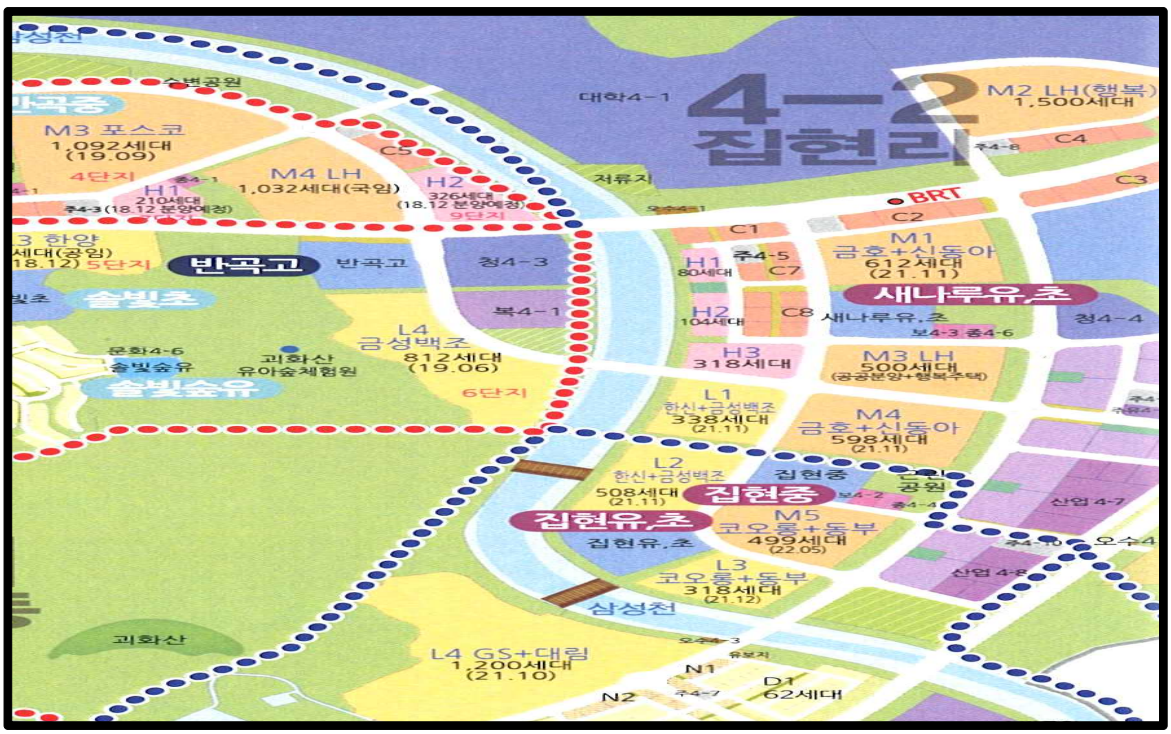

4-2
집현리
대학4-1
M2 LH(행복)
1,500세대
M3 포스코
1,092세대
(19.09)
M4 LH
1,032세대(국임)
H1
210세대
H2
326세대
BRT
반곡고
반곡고
청4-3
복4-1
솔빛초
L4
금성백조
812세대
(19.06)
6단지
괴화산
유아숲체험원
솔빛숲유
M1
금호+신동아
612세대
(21.11)
새나루유,초
H1
80세대
H2
104세대
H3
318세대
M3 LH
500세대
L1
한신+금성백조
338세대
(21.11)
M4
금호+신동아
598세대
(21.11)
L2
한신+금성백조
508세대
(21.11)
집현중
집현유,초
M5
코오롱+동부
499세대
(22.05)
L3
코오롱+동부
318세대
(21.12)
삼성천
괴화산
L4 GS+대림
1,200세대
(21.10)
N1
N2
D1
62세대
산업 4-7
산업 4-8

가칭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위Wee스쿨)' 설립(안)

□ 추진 배경

○ 관내 중·고등학생의 대안교육 수요 충족

- 관내 학교(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부적응 요인 학업중단 학생 수* 증가

  * 중학생: 17명('15년) → 18명(' 16년) → 18명('17년) → 22명(' 18년)

  고등학생: 67명('15년) → 83명(' 16년) → 99명('17년) → 120명(' 18년)

- 관내 중·고등학생의 대안교육기관 위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 필요

  * 단기 위탁 참여 학생 수: 18명(2017년)→22명(2018년)→16명(2019.7.까지)

  중장기 위탁 참여 학생 수: 6명(2017년)→40명(2018년)→32명(2019.7.까지)

○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교 적응력 향상

- 위기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아 존중감 향상 기회 제공
- 교과 외 다양한 활동 및 대안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진로 설정 기회 제공
- 교육 환경 전환과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적응력 향상 기회 제공

○ 위기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안교육 기회 제공

- 현재, 세종시 소재 장기 위탁교육기관은 1개(가온누리*)로 학생 수요에 비해 대안교육기관 시설 부족
- 교육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통한 가정형 Wee 센터 운영의 안전성 확보 필요

□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285호)

○ (국정과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51.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추진경과

○ ('19. 3. 5.) 제55회 2차 본회의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위탁교육기관 운영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관련 의원 발언

○ ('19. 5. 25.) 가정형 Wee센터 화재안전 컨설팅 결과 권고 조치

○ ('19. 6. 13.~6. 14.) 우수 대안학교 탐방 연수 및 협의회 참석
(서울 꿈타래학교, 강화 산마을고등학교, 인천 해밀학교)

○ ('19. 6. 13.~8. 19.) 우수 대안학교 및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Wee스쿨) 탐방 및 협의회 실시(낙동강학생교육원, 울산두남중고, 전남 이음Wee스쿨, 대전 꿈나래 교육원)

○ ('19. 9. 6.) 설립 TF팀 협의 결과 보고에 따른 부지 확정
(세종교육원 공원 부지 내)

○ ('19. 9. 20.) 재정투자심사 “적정”

○ ('19. 10. 17.)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사업개요

○ 사업명: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위Wee스쿨) 설립

○ 위　치 : 세종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옆 공원 부지)

○ 사업 기간 : 2020. 1. 1.～2022. 2. 28.

○ 사업비 : 7,568,000천원

○ 사 업 량

- 부지 면적 및 시설 규모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시설 배치
가정형 Wee센터	480	960	2층 2동(남·녀)
위(Wee)스쿨	780	2,340	본관 (3층)
외부시설	230	230	식당(1실), 메이커 스페이스(1실)
운동장 등	2,510	0	생태학습장, 운동장 등
합계	4,000	3,530	

○ 시설 현황

- 건축면적: 기숙사(남) 240㎡, 기숙사(여) 240㎡, 본관동 780㎡, 식당 150㎡, 실습실 80㎡ 총 1,490㎡
- 연면적: 3,530㎡(기숙사 2층, 본관동 3층 규모 반영)
- 운동장 등 외부시설: 2,510㎡
- 건물 구성: 본관동, 기숙사(남자), 기숙사(여자) 등 3개동, 각 동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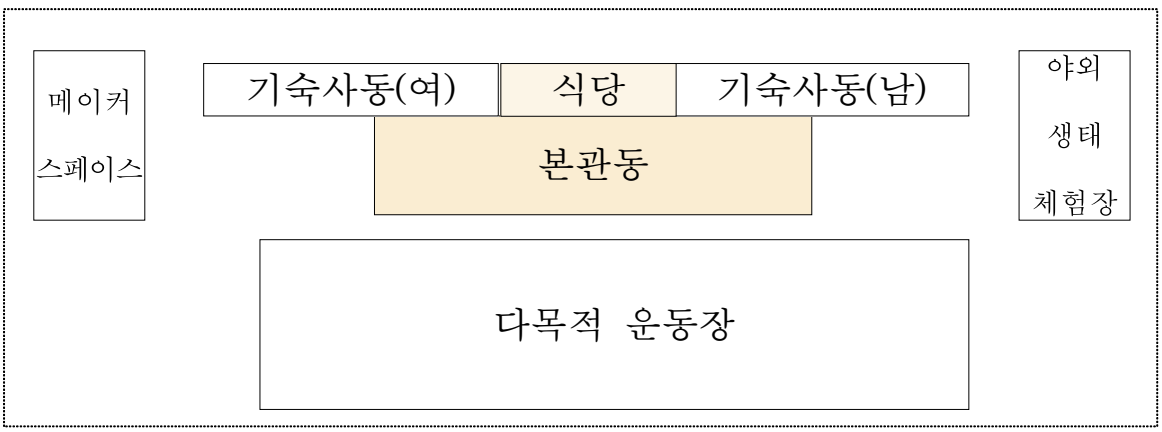

- 기숙사 시설 규모(남・녀)

구 분	실 이름		실수	면적(㎡)	용 도
소요 시설 (가정형 Wee) 학생 남녀 각10명	1층	거실 및 사무실	2	100	기숙학생 아침・저녁 프로그램 운영 및 식사오픈형 사무실
		다용도실	2	40	북카페, 자기주도학습실, 상담실 등
		체력단련실 및 세탁실	2	40	학생 실내 운동 및 소량 의류 세탁
		사감실	2	60	침실, 화장실, 욕실 포함
		침실(2인1실)	2	80	학생 기숙용
		공용면적	2	160	연면적 33.3% 반영
	소계		12	480	
	2층	침실(2인1실)	8	320	학생 기숙용
		공용면적	2	160	연면적 33.3% 반영
	소계		10	480	

- 본관 시설 규모

구 분	실 이름		실수	면적(㎡)	용 도
소요 시설 (위Wee 스쿨)	1층	본부교무실	1	60	교사, 생활지도사 행정업무 담당자 등 근무
		교직원 쉼터	2	30	교직원 휴게실(남, 녀)
		보건실	1	60	약물 치료 학생 지원(Wee스쿨 기능)
		상담실	2	60	개인별 맞춤 상담 지원
		원장실	1	30	센터장(원장) 사무실
		북카페	1	150	인문학 교육 및 정서 안정 지원(독서치료)
		학생 쉼터	2	30	학생 정서 안정 및 휴식 지원(남,녀)
		다목적활동실	1	60	학생 동아리 및 활동중심 수업 지원
		공용면적	1	300	연면적 38% 반영
		승강기	1		
	소계		13	780	
	2층	교과연구실	1	20	보통교과군 교사 연구실
		영상미디어실	1	50	방송실 및 영상미디어 제작 체험
		교과학습실(중)	3	120	중학생 교과학습실(1・2・3학년)
		다목적 강당	1	220	아침 모임(가족회의), 각종 발표회 및 실내 체육 활동 등
		다목적실	2	60	대안교과 수업(바리스타, 전통누비 등)

구 분	실 이름		실수	면적(㎡)	용 도
		공용면적	1	310	연면적 40% 반영(홈베이스 포함)
		승강기	1		
	소계		10	780	
	3층	교과연구실	1	20	보통교과군 교사 연구실
		교과학습실(고)	3	120	고등학생 교과학습실(1・2・3학년)
		다목적 강당	1	220	아침 모임(가족회의), 각종 발표회 및 실내 체육 활동 등
		와이파이존	1	50	대안교과 수업, 진로 진학 정보 검색 등
		다목적실	1	30	대안교과 수업(바리스타, 전통누비 등)
		음악치료실	1	30	음악 감상 및 정서 순화
		공용면적	1	310	연면적 40% 반영(홈베이스 포함)
		승강기	1		
	소계		10	780	

- 외부 시설 규모

구 분	실 이름	실수	면적(㎡)	용 도
외부 시설	메이커 스페이스	1	80	특성화 계열 수업(목공예, 발명 등 실용적 창작활동)
	식당	1	150	식당(0.6N=36㎡ 이상) 조리실(최소면적 100)
	소계	2	230	

- 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시설사업비	설계비 등	비고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위Wee스쿨)	7,568	7,002	566	

- 세부사업비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시설사업비					비고
		설계비	감리비	건축 공사비	부대비	비품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위Wee스쿨)	7,568	473	75	6,798	18	204	

○ 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시설(공사): 6,798 기타: 설계(473) 감리(75) 시설부대(18) 비품(204)	7,568
공사비	소 계		6,798
	건축(신축)	기숙사 960㎡ 본관교사 2,340㎡ 식당 75㎡ 메이커스페이스 80㎡ 조리실 75㎡	5,286
	토목	포장 등 1식	300
		조경 등 1식	300
	추가	승강기 2개소	163
		스프링클러 설비 1식	648
		장애인 편의시설 1식	16
		신재생에너지 1식	85
용역비	소 계		548
	설계	공사비 4.28%(설계 용역 제반 비용 182 추가)	473
	감리	공사비 1.07%	75
기타	소 계		222
	시설부대	공사비 0.25%	18
	비품	공사비 3%	204

□ 기대효과

○ 학업중단 위기 학생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고위험군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

○ 문제 요인별 회복탄력성 신장을 통한 세종 교육 비전 실현

□ 향후 추진일정

○ 2020. 1. 설계

○ 2020. 6. 착공 예정

○ 2022. 3. 개원

□ 위치(위성사진)

의랑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증축(안)

□ 추진배경

○ 노후화된 교사 부속 시설물 및 계단실 증·개축으로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례 증가로 학생 건강 보호와 체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실내체육관 증축

-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과 체육관, 급식실 신축을 연계하여 학교공간조성의 시너지 효과 제고

○ 노후된 급식실을 실내 체육관 하부공간으로 위치변경 후 증축하여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필요

- 급식실의 구분 구획 및 조리종사원 휴게실 부재로 증축 필요

□ 추진경과

○ 2017.5.15.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비 실내체육시설 확충 지시

○ 2017.8.8. 수왕초, 의랑초의 소규모 옥외체육관 설치 요청

○ 2018.2.13.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안)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2018.10.1. 부속동 및 계단실 증축(안)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2019.5.3. 체육관 증축 변경(안)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2019.10.17. 체육관 증축(급식실포함) 변경(안)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2019.10.17. 부속동 및 계단실 증축 변경(안)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사업개요

○ 위　　치 : 의랑초등학교(세종시 장군면 태산길 50-1)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12월

○ 사 업 비 : 3,220,747천원

○ 사업내용 : 의랑초 교사동 및 체육관동 증축

○ 사업규모 및 소요액

학교구분		완성 기준		개교 시기	규모(㎡)		소요액(천원)		
		학급수	학생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양정초	일반	6	60	'42.01	-	1,449	-	3,220,747	3,220,747
	병설유	1	12						
	계	7	72						

○ 사업비 산출내역

항 목	산 출 내 역(천원)	
합계		3,220,747
설계비	102,948천원×1식=102,948천원	102,948
시설비	(조례대철거) 154천원×45㎡=6,930천원 (조례대개축) 49,067천원×1실=49,067천원 (차고철거) 154천원×50㎡=7,700천원 (차고증축) 72,345천원×1실=72,345천원 (숙직실철거) 154천원×50㎡=7,700천원 (교직원휴게시설) 55,401천원×1실=55,401천원 (창고철거) 154천원×41㎡=6,314천원 (창고증축) 72,345천원×1실=72,345천원 (계단실철거) 154천원×54㎡=8,316천원 (계단실증축) 112,012천원×2실=224,024천원 (승강기) 170,693천원×1식=170,693천원 (화장실) 112,124천원×1식=112,124천원 (급식실증축) 635,870천원×1식=635,870천원 (체육관증축) 1,646,000천원 (감리비)35,208천원×1식=35,208천원	3,110,037
부대비	7,762천원×1식=7,762천원	7,762

□ 기대효과

○ 노후된 교사 부속시설 및 계단실 증·개축을 통해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 및 교직원 만족도 제고

○ 노후된 급식시설을 HACCP 기준으로 개선하여 급식의 위생·안전성 및 조리종사원 휴게실 확보

- 적정한 급식실 면적확보 및 구분구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급식환경 구축

○ 미세먼지 대비 학생 건강 보호와 체육교육여건 개선

□ 향후 추진일정

- ○ 2019.12. 설계완료
- ○ 2020.03. 착공
- ○ 2020.12. 준공

□ 위치(위성사진)

1-5생활권 연양초등학교 증축(안)

□ 추진배경

○ 연양초는 일반학급 48학급 규모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51학급 편성으로 완성학급을 초과하여 운영 중,

○ 2022년 연양초 통학구역 내 **H5, H6블럭 1,061세대가 입주**됨에 따라 약 340여명의 학생이 추가 유입되어 **64학급까지 증가 예상**

○ 그에 따라 기존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4층, 13학급 규모의 수평 증축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37(어진동) 연양초등학교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2년 2월 ('22.3.1.부터 학생배치)

○ 사 업 비 : 8,701,000천원

○ 사업내용 : 1-5생활권 H5, H6블럭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한 연양초 증축

○ 사업규모 및 소요액

학교구분		완성 기준*		준공 시기	규모(㎡)		소요액(천원)		
		학급수	학생수		부지	건축 연면적	부지비	건축비	합계
연양초	일반	61	1,525	'22.02	-	3,884	-	8,701,000	8,701,000
	특수	2	12						
	계	63	1,537						
계					-	3,884	-	8,701,000	8,701,000

* 증축 후 완성학급 (※증축 전 완성학급 : 50(특수2 포함))

□ 기대효과

○ 연양초 통학 구역내 학생수 증가에 대비하여 적기 증축 추진을 통해 교육수요자에게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향후 추진일정

○ 2020. 1. 설계 공모

○ 2021. 1. 시설공사 실시

○ 2022. 3. 학생 배치

□ 연양초등학교 위치 및 도면

○ 위치(위성사진)

○ 학교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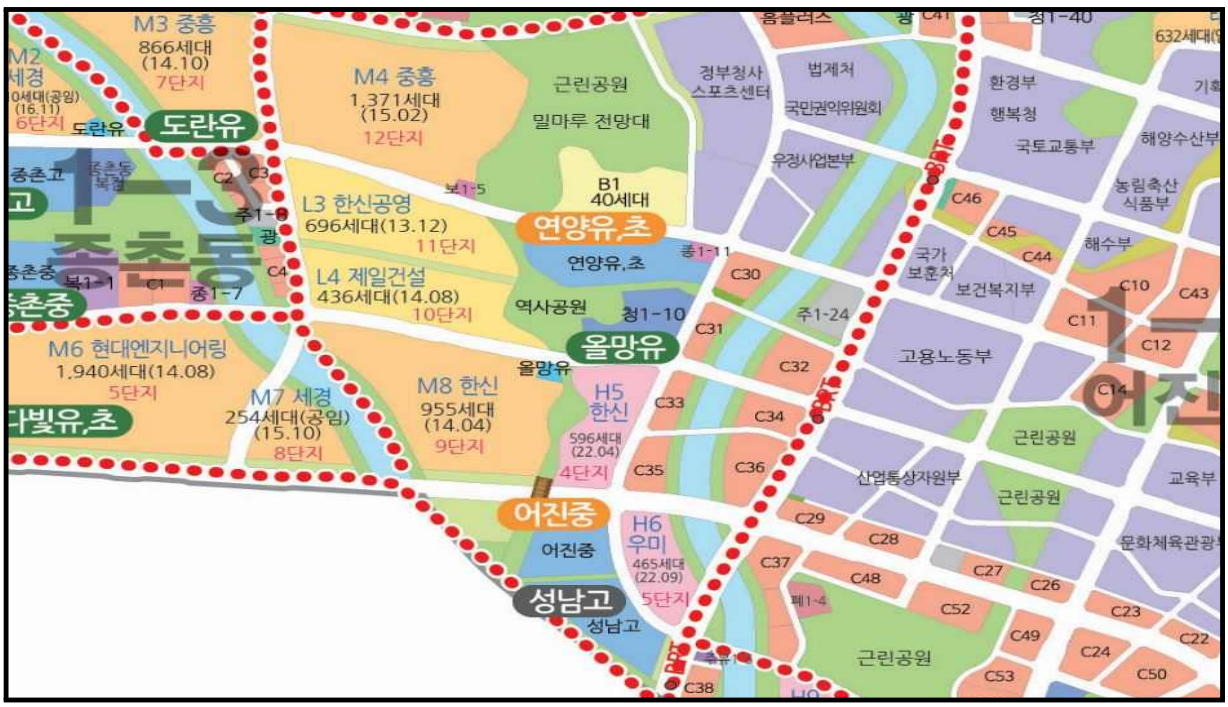

조치원여자중학교 용도폐지 및 철거(안)

□ 추진배경

○ 관련

- (‘18.10.17.) 조치원읍중학교 이전재배치 계획 수립
- (‘19. 3.22.) 제1회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D급) 개축 결정(교육부)
- (‘19. 5. 3.) 조치원여자중학교 시설재배치 계획 수립
- (‘19. 9.25.)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

○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급 판정된 후동교사 개축 결정

○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조치원여자중학교 시설재배치 계획” 에 따라,

- 기존건물의 노후시설개선, 내진보강, 공간재구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 25학급 교과교실제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규모의 증개축사업** 추진

○ **그에 따른,** 학교의 종합계획상 적정배치에 장애가 되고, 부지 활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폐지 및 철거 추진**

- **용도폐지 및 철거(1,034.56㎡)** : 연결통로(108㎡), 다목적교실(602.08㎡), 창고(40㎡), 합숙소(124.14㎡), 골프연습장(75㎡), 락카룸(85.34㎡)

□ 사업개요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1-1번지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1년 2월

○ 사 업 비 : 136,521천원

○ 사업내용 : 다목적교실외 5동 용도폐지 및 철거(면적 1,034,56㎡)

○ 사업규모 및 소요액

학교명	규모(㎡)		소요액(천원)			비고
	부지	철거면적	부지비	철거비	합계	
조치원여중	-	1,034.56	-	136,521	136,521	

○ 사업내용

건물명	사업방법	연면적(㎡)	공사금액(천원)	비고
다목적교실(2동)	철거	602.08	79,474	
연결통로(7)	철거	108.00	14,256	
창고(3동)	철거	40.00	5,280	
합숙소(4동)	철거	124.14	16,386	
골프연습장(8동)	철거	75.00	9,900	
락카룸(9동)	철거	85.34	11,225	
합계		**1,034.56**	**136,521**	

○ 처분 내역

학교명	건물명	연면적(㎡)	대장금액(천원)	비 고
조치원여중	다목적교실(2동)	602.08	441,912	용도폐지 후 철거
	연결통로(7동)	108	171,814	용도폐지 후 철거
	창고(3동)	40	11,831	용도폐지 후 철거
	합숙소(4동)	124.14	196,706	용도폐지 후 철거
	골프연습장(8동)	75	46,598	용도폐지 후 철거
	락카룸(9동)	85.34	301,960	용도폐지 후 철거
계		1,034.56	1,170,821	

□ 기대효과

○ (학교공간혁신)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을 키우는 다양한 공간배치, 어울림, 쉼과 교류가 가능한 휴게공간 등 학생이 참여한 수요자 맞춤형 공간설계를 통한 미래 학교공간 혁신

□ 향후 추진일정

○ 2019. 10 ~ 2020. 2 기본 및 실시설계

○ 2020. 3. 공사발주

○ 2020. 5. ~ 2021. 2. 공사시행

□ 철거 위치도

○ 위치도(위성사진)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 · 군 ·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 · 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 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 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 ·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 · 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 ·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 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